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존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 포함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13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존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 포함	2
2. 부칙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7.
3. 회부연월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은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③「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④ 제2조제11호²⁾에 따른 임시교실, 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스프링클러³⁾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⁴⁾,

2025년 2월 7일자로 시행되었음.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란 법률의 제정·개정 시 그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법률이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법률을 말한다(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 증보판, 국회사무처, 157p).

-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 3) (교육부 제공)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주된 목적으로, 건물 천장에 설치하여 실내온도가 7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 자동 소화장치

* 물을 분무상(噴霧狀)으로 방사시키므로 액체 화재에 효과가 크고, 화재 발견이나 소화 활동이 곤란한 지하 건축물이나 가연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부분에 적합
-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중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현행 「교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한편,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화재가 매년 200건 가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기숙사에서 총 1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교육시설⁶⁾ 화재 발생현황 >

(단위: 동,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화재건수	188	198	191	191	186	190.8
인명피해	17	10	25	27	15	18.8
재산피해	1,834	1,951	1,264	1,747	8,981	3,155.4

자료: 교육부(소방청 화재통계연감)

5)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2.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 비용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

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및 교육원이 해당함(교육부 제공).

< 최근 5년간 교육시설 화재 발생현황(발생장소별) >

(단위: 건)

구분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대학(원)	기타
전기실	18	-	6	4	7	-	-	1
기계실	4	1	-	-	3	-	-	-
사무(강의)실	62	2	16	9	16	-	18	1
실험/실습실	42	-	8	7	15	1	10	1
기숙사	12	-	-		3	-	8	1
옥상	-	-	-		-	-	-	-
내부시설 (급식실, 화장실 등)	207	2	54	37	48	1	65	-
야외 및 외부시설 (분리수거장 등)	4	4	-		-	-	-	-
기타 (부속 및 부대시설)	88	4	28	10	25	1	1	19
합계	437	13	112	67	117	3	102	23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통계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교육기관이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공제급여를 신청할 때 등록한 화재 현황
자료: 교육부(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4년 8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1,577동 중 642동에 화재 예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수학교 건물의 경우 32%가 넘는 곳이 미설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수학교, 기숙사(합숙소) 건물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 기준 : '24.8, 단위 : 동, 백만원 >

구분 (기준: '24.8월)	전체 대상 (동)	설치 완료		설치 예정		예산 추계
		건물수	설치율	건물수	잔여율	
초·중등 기숙사	1,577	935	59.29%	642	40.71%	202,174
특수학교	366	247	67.49%	119	32.51%	44,135

※ 초·중등 기숙사는 '26년, 특수학교는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예정

자료: 교육부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사립 유치원 3,468동 중 1,819동에 화재 예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학교 기숙사 건물의 경우 60%에 가까운 곳이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 특수학교, 기숙사 건물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 기준 : '21.12., 단위 : 동 >

구 분		전체 건물수	설치 건물수(비중)			미설치 건물수(비중)
			전체 설치	일부 설치	합계	
합계		9,605	4,879 (50.8%)	325 (3.4%)	5,204 (54.2%)	4,401 (45.8%)
유치원	사립	3,468	1,458 (42.0%)	191 (5.5%)	1,649 (47.5%)	1,819 (52.5%)
대학교 기숙사	국공립	292	111 (38.0%)	14 (4.8%)	125 (42.8%)	167 (57.2%)
	사립	881*	249 (28.3%)	119 (13.5%)	368 (41.8%)	513 (58.2%)

* 현황 조사에 회신한 사립대 기숙사 건물수(278동은 미회신, 총 1,159동)

자료: 교육부

현행 「교육시설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⁸⁾”

7)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높은 이유는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계획을 2022년도에 수립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8)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에 해당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⁹⁾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¹⁰⁾하고 있었음.

그러나 「소방시설법」 상 화재안전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교육시설의 경우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게 되므로 교육시설 중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¹¹⁾, 현행 「교육시설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신설¹²⁾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로 보임¹³⁾¹⁴⁾.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 바. (생략)

9. 노유자 시설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1) 2004년 「소방시설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다수의 학교시설이 「소방시설법」 상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460호) 검토보고서 참조].

12) 부 칙 <법률 제20181호, 2024. 2. 6.>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 현행 소방시설법령상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등 설치 기준 >

구 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학교 (특수학교 포함)	- 6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 층	-
기숙사	- 연면적 5,000㎡이상 기숙사 모든 층	-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
유치원 (노유자 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 모든 층	-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 미만 모든 층
형 태 (참고)		

자료 : 교육부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계획¹⁵⁾을 수립

것으로 보임.

- 14) 제21대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하여 발의된 「교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460,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심사시 기존 교육시설에도 소급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교육부가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2022년)하여 「소방시설법」상 화재안전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등학교 기숙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위 개정안을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만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위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교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126224)이 의결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됨(법률 제20181로 공포됨).

※ (의안번호 2118460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참조) 교육부 화재안전 정책에 따라 특수학교는 '25년, 초·중등학교 기숙사는 '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교육청 및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석면 제거, 내진보강 등 중장기적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전 교육시설(초중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그 조치기한을 정하기 보다는 정부가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종전 교육시설(초중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삭제

- 15)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계획(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 확대 설치 계획(안)

- (기본 방향)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되, 학교

(2022년)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동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도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¹⁶⁾, 동 계획의 대상은 특수학교와 초·중등학교의 기숙사이므로, 그 외 사립 유치원과 사립대학교 기숙사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⁷⁾.

한편 현행 「교육시설법령」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⁸⁾,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여건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 ○ (연차별 계획) 5년간('22~'26) 단계적으로 설치 (총 1,278동) ※ 설치 계획(동) : ('22) 178 → ('23) 346 → ('24) 293 → ('25) 292 → ('26) 169 ※ 연차별 설치물량은 교육청별 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소요 예산) 총 3,19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 ※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 ○ (관리·점검)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설치 실적이 저조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 및 설치 독려

* 동 계획은 교육시설법(법률 제20181호) 개정 전에 발표한 것으로, 학교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음.

<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및 현황 > ◆ (기준)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 ◆ (현황) 초·중등학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전체의 21%(248교, 341동) - 일부 또는 미설치된 건물은 79%(947교, 1,278동) ※ 전체 초·중등학교 기숙사 현황 : 1,195교, 1,619동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6) (교육부 제공) 특수학교 총 366동 중 247동(67.5%), 기숙사 총 1,577동 중 935동(59.3%) 설치 ('24.8월기준)

17) 교육부에 따르면 임시교실의 경우 현재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된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국립대학 기숙사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내부계획이 수립 중임. 한편 교육부는 공립대학의 경우 설립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화재예방 계획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초·중등학교 합숙소의 경우 무분별한 합숙을 근절하도록 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상 합숙소의 경우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경우 공사비용, 설계 및 감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¹⁹⁾.

또한 소방시설 설치시 현행 「교육시설법」 제10조의3 제2항²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 경우에도 「교육시설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진설계는 설계비용에, 내진설비공사는 공사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²¹⁾.

18) 「교육시설법」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 비용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

19) 교육부는 예산집행은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며, 시도별 기준단가를 마련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20) 「교육시설법」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1)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 비용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교의 기숙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 장 등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²²⁾, 기존 건축물 구조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여 신규로 소방설비 설치가 곤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설비 구축과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계실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필요하고, 건축구조 검토와 석면 천장제거 등 추가적인 부대시설 교체로 비용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임.

< 법령 개정 관련 관계기관 주요 의견 제출 현황 >

관계기관	주요 의견
대학	대학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 여건과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서울대 등 10여개 대학)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소방시설법 제정(2004년) 이전 설립된 사립유치원(약 340개원, 400동)에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각급 학교 재정 여건에 큰 부담 이 될 것으로 판단됨(서울시교육청) 스프링클러 설치 시 필요한 소화수조 및 가압송수장치 설치 공간에 대한 용적율, 시설구조, 동파 등의 문제로 설치 불가한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 설립주체는 기존 시설에 소급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22) (교육부 제공, '21.8 기준) 미설치 건물동수 및 소요비용: (유치원)2,010동 7,171억원, (사립대)632동 8,562억원

	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인 열악함 및 재정지원 요청을 호소하고 있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후 개정 필요(경기도교육청)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 협의회	기존 건축물 구조 상 소방설비 신규 설치는 현저히 곤란 할 수 있고, 관련 부속설비(소방펌프, 배관,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의 증·개축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안을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의무화를 요청 함
한국대학 법인협의회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이번 개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데, ①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는 이미 이에 관한 기본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있는 점, ②해당 법상 의무설치 기준(특정소방대상물)에 미달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안전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검토 대상 개정안에서 시행일 이전에 설치 완료된 교육 시설에까지도 소방시설 설치 강제 의무를 확대 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입법 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제 공: 교육부

2. 부칙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당초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제20181호)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시행일을 법률 제20181호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하였으나, 법률 제20181호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의 부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7